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10.24)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규 창]

목 차

1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	1
2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5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1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0. 1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0. 16

2. 개정이유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거창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연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목적(안 제1조)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 성실 이행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 다.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안 제5조·제7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 아동·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운영

라.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8조·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마. 사례관리팀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관내 아동·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1천만원 예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9. 15. ~ 10. 0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연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고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7호, 2014.1.21.,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8호, 2014.1.2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0.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0. 16

2. 요구이유

- 거창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위탁대상 :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 나. 위탁시설 현황

○ 골프연습장

- 위치 : 거창읍 심소정길 39-36번지 일원
- 규모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리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3,917㎡	지상2층	258.0㎡	300.2㎡	철근콘크리트 구조 10타석	100m

○ 테니스장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 일원
- 규 모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양투카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66.28m ²	12개	7,829m ²

- 다.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 라.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바. 예산지원 : 없음(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로 운영)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군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4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2014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14년 12월
- 위탁계약 체결 : 2014년 12월
- 위탁운영 : 2015년 1월 1일

다. 위탁운영 선정계획 : 따로 붙임

라.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관리위탁)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 2013년 11월 경남도 수감결과 지적받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 하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4.7.8.] [법률 제12201호, 2014.1.7.,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3.25>
 -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4. 10. 1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6.

2. 계획의 필요성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1. 계획의 수립 개요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
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4.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5. 지역보건 세부사업계획
 -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 사업분야별 총괄예산
6.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지침(보건복지부)

5. 검토의견

-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계획안을 수립·제출한 것으로
- 동 계획서 수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수립의 개요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
 - 3개분야 8개 과제의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수립되어있음
- 동계획안의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우리군의 지역별, 계층별 인구특성과 연령표준화 사망률, 주요질병 사망률 추이, 지역사회 건강수준, 지역보건의료 주요현황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 또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를 조사하는 등

-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4개년 동안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비전과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이는 대체로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에 따라 지역자원과 예산을 사업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 다만 지역주민 관심과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조사대상 인원이 600명으로 다소 적고 설문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반 주민보다 병원 또는 보건기관 방문자에 대한 설문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향후 계획 수립시에는 표본 추출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보건소에 기획팀을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용역과 컨설팅 자문기관의 자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를 거쳤지만 보건사업의 수혜계층을 대표하는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으며
- 세부추진계획중 지역보건의료자원 연계 협조를 위해 공공의료 및 민간자원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기관·단체별로 여러 가지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에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 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